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76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권향엽 · 김용만 · 정진욱
진성준 · 이수진 · 허성무
어기구 · 곽상언 · 강준현
문금주 · 백승아 · 이주희
소병훈 · 손 솔 · 오세희
박희승 · 박선원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성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은 배제되고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됨.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양형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

써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0조제7항제2호).

법률 제 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한다.

제50조제7항제2호 중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 7. (생략) ② ~ ⑨ (생략)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불쾌감</u> -----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 ~ ⑥ (생략)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생략) ⑧ · ⑨ (생략)	제50조(벌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1. (현행과 같음) 2. ----- ----- <u>불쾌감</u> ----- --- 3. (현행과 같음) ⑧ · ⑨ (현행과 같음)